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장기재직휴가의 사용일수 조정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장기근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 확대시행(총20일)

-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5일 ⇒ 10일(변경)
-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10일 ⇒ 15일(변경)
-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20일(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공무원법』 및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2835(2018. 4.10.)〕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22524(2018. 4.12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: 2018. 4.12.~ 2018. 5. 2.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장기재직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5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생 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,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다.	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장기재직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15일 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⑫・⑬ (생 략)	⑫・⑬ (현행과 같음)

참고 2	제26회 기관장과의 합의사항

제26회 기관장과의 협의결과(합의사항)

2018년도 제26회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장기 재직휴가 확대

〔합의사항〕

◦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한다.

- 10년 이상 : 10일, 20년 이상 : 15일, 30년 이상 : 20일
 (단,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누적으로 산정)

2. 읍면 등 토·공휴일 숙직 폐지

〔합의사항〕

◦ 읍면을 포함한 토·공휴일 숙직이 불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18시까지 일직만 실시 후 재택 당직으로 전환한다.

3. 단체보장보험 개선

〔합의사항〕

◦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 개인별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을 개선한다.

2018 년 3 월 26 일

성 주 군 수 김 항 곤 김항곤

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배 재 억 배재억